

관광진흥법 위반 업체(여행업) 1차 행정처분 (시정명령) 공시송달 공고

「관광진흥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(여행업)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*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1. 처분의 제목 : 관광진흥법 위반(보험 가입 등)에 따른 1차 행정처분(시정명령)
2. 처분일자 : 2025. 5. 12.(월)
3.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

업종	상호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
국내외 여행업	코엔이유	김*경	파주시 중앙로 288(아동동)	관광진흥법 제9조 (보험 가입 등)	시정명령 2025.05.12.

4. 법적근거 :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5. 처분 및 공고기간

가. 처분내용 : 시정명령(2025. 5. 30.까지 여행업보증보험 가입)

나. 공고기간 : 2025.06.04.(수) ~ 2025.06.20.(금)

다. 문의처 : 파주시청 관광과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파주시청 관광과(3층)

- 연락처 : 031-940-4361, 팩스 : 031-940-4369

- 이메일 : juyoun6328@korea.kr(이메일 제출 시,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必)

6. 게시장소 : 파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, 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

7. 기타사항

가.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

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나.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관광과(☎ 031-940-436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06. 04.

파 주 시 장